

충주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|-----|
| 의안번호 | 844 |
|------|-----|

발의일시 : 2007. 9. 21
제출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1. 제안이유

- 지역인재를 키워내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충주시학사를 관리하는 조례에 학사운영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수탁자가 운영하는 운영규정으로 위임되어 있음
- 따라서 학사운영에 근간이 되는 학사원장 및 직원등 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신설 관리코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관리자 자격요건 설치(제4조의2)

- 학사원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 구체화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 31조 임용 결격사유 준용) 및 임용권(시장) 확정과 위탁의 경우도 시장의 추천에 의한 수탁자가 임용으로 구체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임용 결격사유)

나. 예산소요 전망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충주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주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충주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4조2항의 “학사원장 및 관리직원에 관한사항”을 “직제 및 정원, 학사원장 및 직원의 임용절차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관리자) 학사원장 및 직원은 지역인재를 키워내는데 충분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를 시장이 임용한다. 단, 학사를 위탁할 때는 시장의 추천을 받아 수탁자가 임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○ 충주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4조(운영)①(생략)</p> <p>②입사생 선발 및 관리, 학사원장 및 관리직원에 관한사항 등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 다만, 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을 정한다.</p> | <p>제4조(운영)- - - - -</p> <p>②- - - - -, 직제 및 정원, 학사원장 및 직원의 임용절차- -.</p> |
| <p><u>신설</u></p> | <p>제4조의2(관리자) 학사원장 및 직원은 지역인재를 키워내는데 충분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를 시장이 임용한다. 단, 학사를 위탁할 때는 시장의 추천을 받아 수탁자가 임용한다.</p> |

관계법령 발췌

□ 국가공무원법

第33條 (缺格事由)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務員에 任用될 수 없다.<改正 1973.2.5, 1978.12.5, 1981.4.20, 2007.3.29>

1. 禁治產者 또는 限定期產者
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
 3. 禁錮 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
 4. 禁錮 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猶豫의 期間이 完了된 날로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
 5. 禁錮 이상의 刑의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
 6.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薬失 또는 停止된 者
 7. 懲戒에 의하여 罷免의 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
 8. 懲戒에 의하여 解任의 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
- ②削除 <1981.4.20>

□ 지방공무원법

第31條 (缺格事由)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務員이 될 수 없다.

<개정 1966.4.30, 1973.3.12, 1978.12.6, 1981.4.20, 2005.3.31>

1. 禁治產者 및 限定期產者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
3. 禁錮 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,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5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
4. 禁錮 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猶豫의 期間이 滿了된 날로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
5. 禁錮 以上의 刑의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徵戒에 의하여 罷免의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
8. 徵戒에 의하여 解任의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